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6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2014.3.24.)에 따라 우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 조직·인력 운용, 임원 해임요구, 대행사업 비용부담(안 제3조~제5조)
- 지도감독, 해산사유(안 제6조~제7조)

다.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개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제10조)

라.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 성과계약서의 작성·평가, 경영실적 평가·진단,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안 제11조~제16조)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감하는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 은 <u>100분의 100</u>으로 한다.</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 ----- <u>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u> -----.</p>
<p>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p> <p><신 설></p>	<p>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p> <p>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u>100분의 50</u>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u>「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u></p> <p>1. <u>특급호텔 : 20%</u> 2. <u>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u></p>	<p><u><삭 제></u></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상 법 개정사항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 나. 부칙의 시행일, 적용시한 및 단서조항 정비

□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

‘16년 말까지 조례로 재산세 75% (‘17년~18년말: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경감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나.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비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55제②항제1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추가 경감율(50%)을 적용하여 재산세 면제

다.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도래에 따른 조항 정비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도래(2014.12.31.)에 따라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 규정 삭제

라. 부칙의 시행일, 적용시한 및 단서조항 정비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다만 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252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시행일) 중 “2016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부칙 제2항(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후단에 “단,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부칙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u>2016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②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p> <p>②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u>단,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u></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 심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 제1252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시행일) 중 “2016년 1월 1일부터” 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부칙 제2항(기존 위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후단에 “단,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8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253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시행일) 중 “2016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u>2016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 부터</u> 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수탁운영자에게 재위탁 심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시설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보다 질 높은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 제1253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시행일) 중 “2016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개정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p> <p>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
- 나. 금연지도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가. 금연지도원 위촉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안제9조의2제①항)
 - 금연조치를 위하여 지도원 위촉규정을 신설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가능
- 나.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규정 신설(안제9조의2제③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